

	원격교육운영규정	규정번호	3-4-8
		제정일자	2005.03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15차
		소관부서	교무처 (원격교육지원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‘대학’이라 한다) 학칙 제38조(교과이수단위), 제39조(수업 및 교수시간)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원격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‘원격교육’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, 이 규정에서는 블렌디드러닝, 웹보조학습, 원격수업을 말한다.

② 온라인 수업은 ‘실시간 온라인 수업’과 ‘동영상 온라인 수업’으로 구분한다.

③ ‘블렌디드러닝’은 실시간 온라인, 동영상 온라인, 출석 수업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.

④ ‘웹보조학습’은 출석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.

⑤ ‘원격수업’은 평가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동영상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.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⑥ 삭제 <2022.07.01.>

⑦ ‘콘텐츠’는 교수자가 온라인교육 용도로 제작한 자료로 블렌디드러닝의 콘텐츠는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, 오디오 형태를 의미한다.

⑧ ‘원격교육 시스템 (LMS, Learning Management System)’은 온라인을 통해 교수-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.

제3조(운영방향) ① 교수와 학습자 간의 시·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,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실행함으로써 정규수업은 물론 보충교육 및 반복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.

②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산업체 위탁생에게 재택 수업의 기회를 제공한다.

③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및 수업 관리를 통해 계절학기생과 인턴십 참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.

④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및 직업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의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인다.

⑤ 수시 및 정시 합격생에게 선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콘텐츠를 대학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.

제4조(위원회) ① 원격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‘원격교육관리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규정에 따른다.

1. 삭제 <2023.03.01.>

2. 삭제 <2023.03.01.>

3. 삭제 <2023.03.01.>

4. 삭제 <2023.03.01.>

5. 삭제 <2023.03.01.>

③ 삭제 <2023.03.01.>

④ 삭제 <2023.03.01.>

제5조(개설 일반) ① 원격교육 강좌는 학기별로 개설된다. 다만, 계절학기, 평생교육원, 신입생 예비대학 강좌는 예외로 한다.

② 원격교육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규 교과목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③ 수시 및 정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예비대학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 하계, 동계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해외 인터넷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⑥ 비학점 강좌 수강생들의 학습활동 내역을 관련 과목의 평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.

제6조(교수방법 및 강좌의 운영) ①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과목의 교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하며, 담당교수가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1. 텍스트, 음성,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한 강의진행

2. 강의 내용, 리포트, 강의자료실 등 강의 관련 정보공유

3. 강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한 상설 게시판 설치

4. 강의 계획에 따른 출석수업의 병행

② 강좌 담당교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강좌 담당 교수는 개요 및 학습목표 등의 기본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

2. 강좌 담당 교수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제공하는 학습자료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3. 강좌 담당 교수는 질문 게시판과 쪽지 등을 활용하여 학습 및 강의 운영과 관련된 학습자의 물음에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한다.

4. 강좌 담당 교수는 적어도 1회 이상의 과제와 토론 및 팀프로젝트, 자료실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측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가방법) ① 원격교육 개설 과목에 대한 평가는 출석 및 시험, 과제, 토론 참여도 등을 반영할 수 있다.

② 평가방법은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교과목 운영) ① 원격교육 교과목 콘텐츠는 학습목표, 학습동영상 및 상호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[별표 1] 및 [별표2]의 인정기준을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.

② 원격교육 교과목 콘텐츠의 상호 학습활동은 반드시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며 온라인 상호작용 인정기준은 [별표2]와 같다.

③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운영한다.

④ 원격교육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육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콘텐츠 개발) ① 콘텐츠 개발을 담당할 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에 따라 외부 수주에 의하여도 콘텐츠를 개발, 구매 및 임대할 수 있다.

제10조(업무분장 및 예산 확보) ① 원격교육과 관련된 제반 학사행정은 교무처에서 관장하고,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연간 원격교육 운영경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.

② 원격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원에서 지원한다.

③ 원격교육 시스템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, 콘텐츠 제작과 질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

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21학년도 2학기 원격교육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